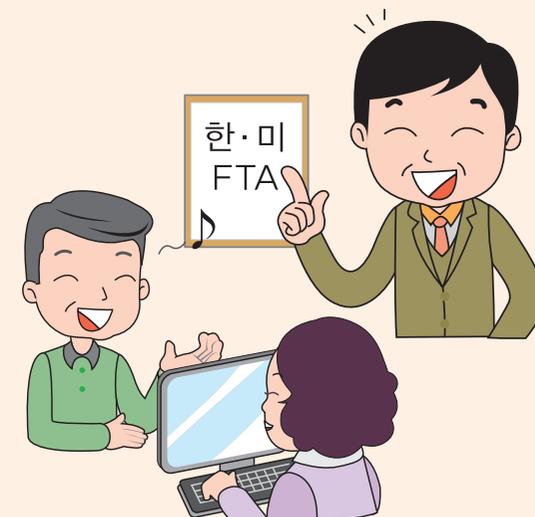




한·미 FTA

# 미리 알아보는 한·미 FTA 특혜관세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Government Complex Daejeon 920 Dunsan-dong Seo-gu Daejeon 302-701, Korea



# 미리 알아보는 한·미 FTA 특혜관세

## CONTENTS

I.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	1
•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나요?	
•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 감지는 수입물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데, 현재 얼마만큼 수입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수리하기 위해 미국에 보낸 배를 다시 수입할 때, 수리비는 과세가 되나요?	
• 미국에서 한국산 물품의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취급수수료도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II.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6
• 미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멕시코에서 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도축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Made in USA로 표시해야 하나요?	
•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롭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 모든 품목의 섬유·의류에 대해서 원사기준이 적용되나요?	
•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III.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	12
• 수입자가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죠?	
•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IV. 특혜관세 적용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14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전심사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엄격하다고 하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섬유·의류는 원산지 검증이 일반물품과 다르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보류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나요?	
V. 알아두면 좋은 자료 -----	19
• FTA 관련 문의처	
• 관세청 FTA 포털	

# I.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됩니다.

##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나요?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07.4.2일 타결되었고 '07.6.30 양국간 서명되어, 현재 국회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각 분야별(상품, 섬유, 농업) 품목은 품목별 관세철폐일정에 따라서 상대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 상품(공산품/임·수산물)분야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 약 94%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 농업분야의 경우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다양한 예외조치가 있으며 국내 영향이 거의 없는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됩니다.
- 섬유분야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대미 수출품의 61%가 즉시 철폐됩니다.



##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나요?



-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90%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분야별 품목별로 관세의 철폐방식이 다양하여 즉시에서 20년까지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채의 경우 발효 3년차에 완전 철폐되며 수산물인 명태의 경우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15년후에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발효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산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식(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상들리에(3.9) 등
5년	틀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블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감자는 수입물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데 현재 얼마만큼 수입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명태, 감자, 대두, 분유, 옥수수, 오렌지 등은 일정량까지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 되어 낮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거나 무관세 수입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율 할당의 운영방식은 선착순, 수입권공매,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태를 수입하는 경우 발효 1차년도에는 4,000톤 까지 선착순방식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며, 4,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실행관세율(MFN)이 적용됩니다.

### I TRQ(Tariff Rate Quota)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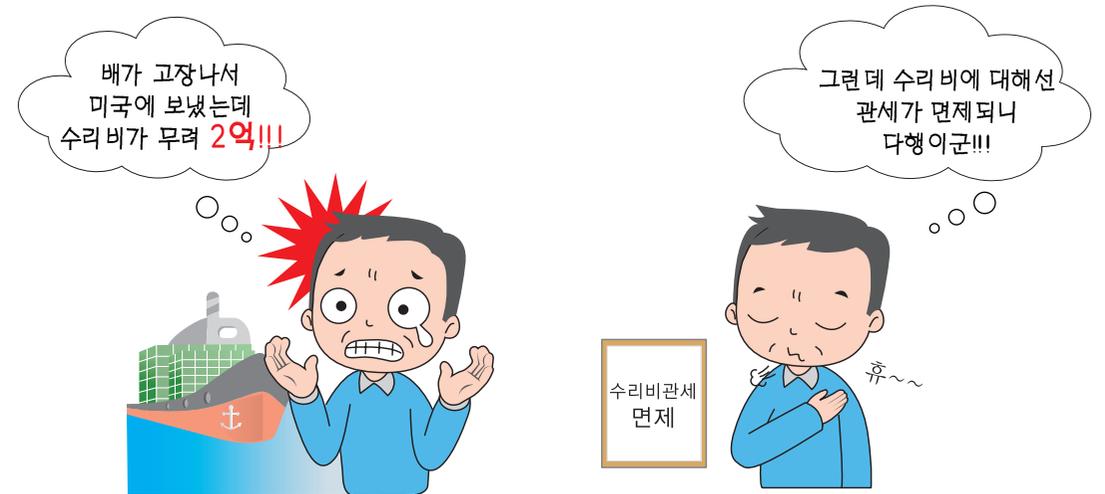
TRQ란 관세율 할당이라고도 하는데,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대신 관세를 이중으로 설정하여 개방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그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수입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TRQ 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품목별 협회·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정표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가 되면 TRQ 관리는 종료됩니다.

수리하기 위해 미국에 보낸 배를 다시 수입할 때 수리비는 과세가 되나요?



- 협정문 제2.6조에 따르면 상대국에서 수리·가공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가공의 결과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협정문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리비 또는 가공비는 관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과세하게 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물품의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취급수수료도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 한·미 FTA에서는 양국간의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물품반출에 관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채택하여 도착후 가능한 48시간 내 화물이 반출되도록 함으로써 9.11테러 이후 장기화된 미국내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또한 현재 미국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도 한국산에 대해선 철폐함에 따라 연간 4,700만불 규모의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중가세)되며 \$2000 이상 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의 0.21%(최대 건당 \$485), \$2000 이하의 물품은 자동신고는 \$2, 개인에 의한 수동신고는 \$6, 세관에 의한 수동신고는 \$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II.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산 물품이란 미국의 영역안에서 생산되고,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가공, 조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문 제6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 본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는 별도로 제4장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	→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농산물, 광산물, 임산물)	
2개국 이상 걸쳐 생산	→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국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공산품)	
	세번변경 기준	→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	→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ex: 자동차)
	특정공정 기준	→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역외가공	→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공정이 FTA 체결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우) ※한미FTA에서는 채택되지 않음	

멕시코에서 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도축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Made in USA'로 표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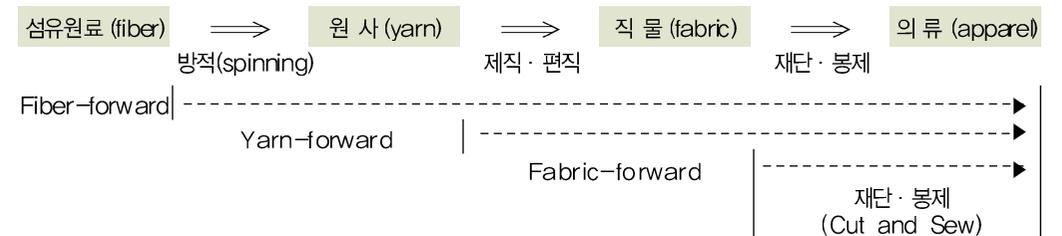
- 한·미 FTA협정의 경우 협정문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의거 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생육여부를 불문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은 쇠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도 포함되나,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협정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등 국내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는 특혜관세 부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혜관세 부여 목적의 원산지국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예로 멕시코산 소가 미국에서 6개월 미만 사육된 후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으로 특혜관세는 부여 받지만,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는 “멕시코산”으로 하여야 합니다.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롭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 원사기준 방식(yarn 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온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 즉, 옷이 만들어지려면 'fiber, yarn, 생지, 재단, 봉제, 날염'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원사기준 방식에 따르면 중국에서 원사를 들여와 국내에서 옷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Ⅰ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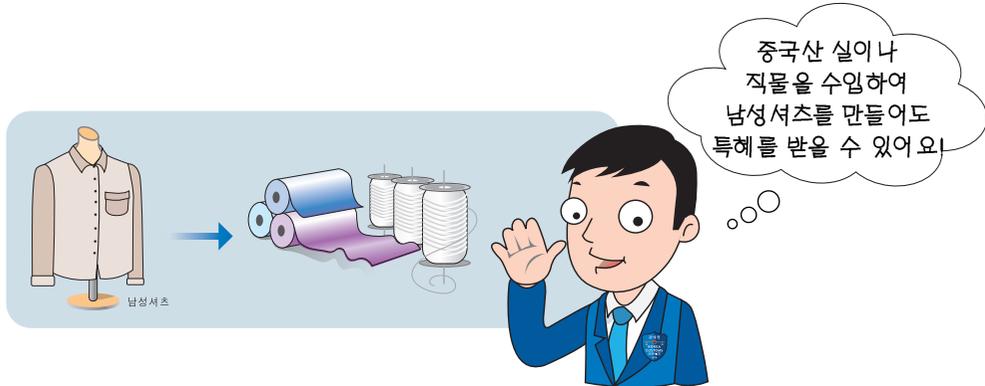


원사의 경우 역내에서 방적공정(spi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직물의 경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weaving) 혹은 편직공정(knitting)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 혹은 편직공정을 수행 후 재단(cutting), 봉제공정(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모든 품목의 섬유·의류에 대해서 원사기준이 적용되나요?



-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HS 10단위)과 투입재의 경우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은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사, 기타 순견직물, 기타 합성섬유, 기타의 직물 및 기타 인조섬유 장 섬유사 등 248개 (HS 8단위)는 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 까지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5년간 원산지 예외 쿼터(TPL)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한·미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일정 기준하(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등)에 OPZ(Outward Processing Zone)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여,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정된 OPZ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혜택을 부여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지역도 OPZ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인정사례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적용방식	ISI 방식	역외가공(OP)방식	역외가공(OP)방식
적용품목수	4,625개 *개성공단 생산가능품목 전체 (HS6단위 4,625개)를 대상	267개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예정품목 (HS6단위 267개)를 대상품목화	100개 (HS6단위 기준)
품목선정	한국측이 선정	한국측이 선정	ASEAN에서 선정
품목개정	3개월 전 서면 일방통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한국측의 품목개정 요구기능
적용 조건	개성공단 및 한반도내에서 역외가공 후 한국에서 수출	역내산재료 60% 이상 + 역외비용 40% 미만 + 협정상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가격기준: EX-WORK	역내산재료 60% 이상 + 역외비용 40% 미만 + 협정상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가격기준: FOB
협정 발효	'06.3	'06.9	'07.6

※역외가공 : 두 개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경우 체결당사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3개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최종품을 만든 후 상대체결당사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

### Ⅲ.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 수입자가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죠?



- 한·미 FTA에서는 과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들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됩니다.

| FTA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협정	증명방식	증명주체
한·칠레 FTA	자율증명	수출자
한·싱가포르 FTA	기관증명	- 싱가포르 : 세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한·EFTA FTA	자율증명	수출자
한·아세안 FTA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 아세안 : 각국 정부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한·미 FTA	자율증명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증명서식은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였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하였습니다.
- 협상시 우리측은 원산지증명서식은 정형화된 서식, 유효기간은 1년을 제안하였으나, 통관 절차 간소화 및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법령에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미화 1000불 상당 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토록 규정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에서도 동일)

| FTA별 원산지증명 방식 및 유효기간 |

협정	증명방식	유효기간
한·칠레 FTA	양국간 통일증명양식	2년
한·싱가포르 FTA	양국간 각자 증명양식	1년
한·EFTA FTA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아세안 FTA	협정상 규정양식(AK양식)	6개월
한·미 FTA	정형양식없음	4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협정문 제6.15조 4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①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선적 ②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선적일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원산지 포괄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복수의 수출입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IV. 특혜관세 적용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에서 의사표시 없이도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또한, 휴대반입물품, 우편물등 소액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적용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심사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한미 FTA는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터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에게 미리 문의하면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심사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효력은 사전심사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결정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발생하며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효기간 폐지예정)
- 다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사전심사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없으므로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청인은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판정내용은 별도로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미국이군! 이제 수입하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겠군! 사전심사제도가 있으니 정말 편하군...



엄격하다고 하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한·미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원산지 조사결과 및 특혜관세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역업자의 권익확보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영업비밀서류는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조사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조사대상업체의 조사 거부·기피,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증명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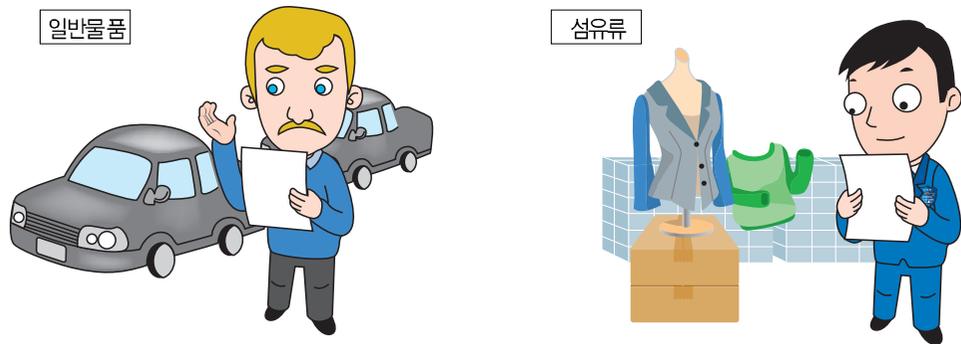
| FTA 별 원산지 검증제도 |

구 분	검증방식	현지조사주체
한·칠레FTA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한·싱가포르 FTA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한·EFTA FTA	제한적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한·아세안 FTA	간접검증	원산지 발급기관
한·미 FTA	직접검증 단, 섬유·의류상품은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

섬유·의류는 원산지 검증이 일반물품과 다르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 일반물품과 달리 원산지 검증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국 정부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사요청이 가능하며, 양국은 수입국이 수출국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예고없는 실사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해 실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 특혜관세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보류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나요?



-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 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 FTA는 우리 지적권 제도 선진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세관 통과시 저작권 침해주장 물건에 대해 수입보류조치등의 통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저작권자는 위조상품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보류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반출정지 효력은 전국세관에 대하여 1년이상 지속됩니다.
- 또한, 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자가 역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이 불허됩니다.



## V. 알아두면 좋은 자료

### FTA 관련 문의처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법령 관련 : 재정경제부 양자협력과 ☎ 02) 2150-9355
- 통관 관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042) 481-7643, 7896  
관세FTA고객지원센터 ☎ 1577-8577 <http://fta.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 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 FTA종합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정보수집 비용 절감
- 전자통관시스템(UN-PASS)과 연계하여 One-Stop업무처리 체제 구현
- 기업 참여 Contents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FTA 구현

#### • FTA포털이 제공하는 주요정보

FTA 개요	FTA 개념, FTA 최신 정보, FTA 언론보도, 민원 화신사례 등
FTA추진현황 및 성과	국내외 FTA 추진현황(FTA 체결국 정보 등), 칠레, 싱가포르 등 FTA 체결 성과
FTA법령 및 통관절차	협정, 법령, 고시, 지침 등 FTA 관련 모든 법규 정보, FTA 수출입 통관 절차, 생산 공장 보유업체 지정 절차, 수입전 FTA 관세혜택을 알 수 있는 간편세액계산시스템
FTA 비즈니스 모델	추진배경, FTA 비즈니스 모델 소개(총20개), 컨설팅 신청
FTA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안내, 발급절차 및 기재요령, 인터넷 발급절차, 원산지총족 여부 확인 시스템
자료실	알기 쉬운 FTA 용어집, 업무매뉴얼(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원산지 오류사례 등
참여광장	관세 FTA고객지원센터와 연계한 Q&A 서비스, 설문조사(Poll), 건의사항

### 한·미 FTA

### 미리 알아보는 한·미 FTA 특혜관세

발행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발행일 : 2008년 1월

STEP Design  
042. 624. 0924

이 책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042-481-7643)